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1. 관련

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나. 전파법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제58조의11, 제58조의13(법률 제20067호)

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23-24호, '23.12.29.)

2. 우리원은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위조 시험성적서 재발방지 대책, 적합성평가 표시 간소화 등 전파법령 개정에 따른 적합성 평가 고시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고시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24. 4. 26. ~ 6. 26.(60일간 이상)

나. 제출처 : 국립전파연구원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061-338-4711, kimjh777@korea.kr)

※ 의견수렴 기간 중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에서 전자공청회 실시

- 붙임 1.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부.
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1부. 끝.

